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소속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경상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

나. 제안이유

○ 2023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소관부서	대상기관	사업명	출연 예정액	비고
계		1개 기관	2개 사업	250,000	
1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 펀드 지원	200,000	'22~'24 5억원
2			경북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 지원	50,000	'22~'25 2억원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조영진)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

□ 동의안 심사의 근거 및 필요성

-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18조 제3항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 이는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절차 강화를 통해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1)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또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 여부인지에 대해서만 한정되고,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14년 12월에 정식 출범한 지역 창업전담기관으로, 혁신형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 붐 조성 및 창업교육,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ICT융복합 신산업 육성, 창업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촉진 및 지역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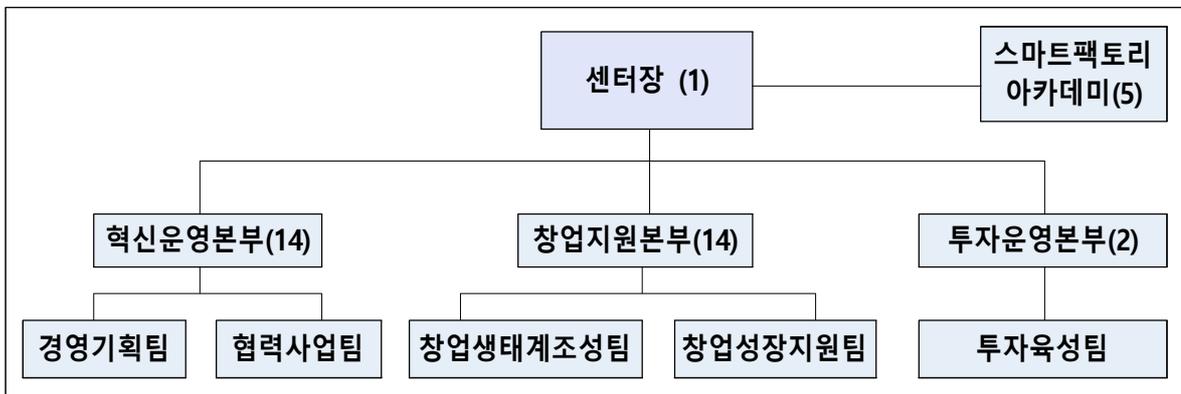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일반현황

- ▶ 설립 일 : 2014. 12. 17
-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2층
- ▶ 파트너기업 : 삼성전자(주), 인탑스(주), SAP코리아 등
- ▶ 인력구성

구분	계	센터장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책임	선임	주임	사원		지자체	대기업	기타
정원	19	1	3	4	6	5	-	-	-	-
현원	36	1	3	4	7	4	10	-	7	-

※ 파견인력 : 7명 (삼성전자 2, 스마트팩토리아카데미 5)

- ▶ 조직도



□ 출연의 적정성

- 이번 출연의 목적은 경북지역의 지속가능한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조성되는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²⁾ 펀드’ 및 ‘경북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에 대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자금 2억 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경북 청년애꿈 임팩트 펀드’(결성일; ‘22.11.22.)는 총액 50억원 (‘22년 20억, ‘23년 20억, ‘24년 10억)을 조성하여 8년(투자 4년, 회수 4년)간 경북지역 청년창업기업 및 ESG³⁾ 영위 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22년에는 8개사에 14억 5천만원을 투자했으며, ‘23년 6월말까지 6개사에 6억 5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경북청년애꿈 임팩트펀드	존속기간	결성일로부터 8년 (투자 4년, 회수 4년) + 2년 연장(필요시)				
	운영기관	(주)임팩트스퀘어 ⁴⁾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운영				
	펀드총액	50억원 이상 (1차 37억원 확정, 2차 13억원 모집중) ▶ (1차) SK스페셜티 28.5, 경북도 5 , 임팩트스퀘어(운용사) 1.5, (주)영남대학교기술지주 1,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1 ▶ (2차) (주)푸드팩토리, NH농협 등 출자 협의중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24년
	계	5,000	2,000	2,000	1,000	
	GP⁵⁾	경북도(창조센터)	500	200	200	100
		임팩트스퀘어	150	60	60	30
	LP⁶⁾	SK스페셜티	2,850	1,140	1,140	570
		민간출자자	1,500	600	600	300

- 2)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 재무 수익과 함께 예측 가능한 사회 또는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단체, 펀드들에 대한 투자
- 3) **ESG**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며, 이들 요소를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
- 4) **(주)임팩트스퀘어** : 2010년 설립된 ESG 비즈니스 컨설팅, 임팩트 투자 전문기업
- 5) **GP(General Partners)** : 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 및 전반적인 펀드 운용을 맡는 출자자
- 6) **LP(Limited Partners)** : 조합의 채무에 대해 출자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며, 펀드 운용에 대한 권한이 없는 출자자

- ‘경북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결성일; ‘22.12.30.)는 모태펀드⁷⁾의 지원(국비 38.5억원)을 받는 펀드로, 총액 50억 2천만원을 조성하여 7년(투자 4년, 회수 3년)간 경북·대구·강원지역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엔젤 징검다리펀드	존속기간	결성일로부터 7년(투자 4년, 회수 3년) + 2년 연장(필요시)						
	운영기관	(주)와이앤아처 ⁸⁾						
	펀드총액	50.2억원 ▶ 모태펀드(국비) 38.5, 운용사(와이앤아처) 4.5, 경북도 2, 대구시 2, 삼보모터스 2, 이투컬렉션 1, 강원창경 0.2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5,020	1,255	1,255	1,255	1,255
GP		와이앤아처	450	112.5	112.5	112.5	112.5	
LP		경북도(창조센터)	200	50	50	50	50	
		대구시	200	50	50	50	50	
		삼보모터스	200	50	50	50	50	
		이투컬렉션	100	25	25	25	25	
	강원창조센터	20	5	5	5	5		
모태펀드(국비)		3,850	962.5	962.5	962.5	962.5		

- 최근 들어 벤처투자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비중은 약 20%(경북 '21년 기준 약 1.6%) 정도에 머무르면서 벤처투자의 수도권 편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7) 모태펀드 :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운영 중

8) (주)와이앤아처 : 2015년 설립된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 전문기업

- 최근 5년('17~'21) 수도권-비수도권 벤처투자 현황 (억원, %)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금액	비중								
수도권	18,029	82.3	25,299	81.5	30,685	79.4	30,986	78.2	57,672	81.8
서울	12,719	58.1	17,097	55.1	23,041	59.6	21,831	55.1	43,243	61.4
비수도권	3,866	17.7	5,756	18.5	7,947	20.6	8,656	21.8	12,795	18.2
경북	314	1.4	330	1.1	453	1.2	996	2.5	1147	1.6
합 계	21,895	100.0	31,055	100.0	38,632	100.0	39,642	100.0	70,467	10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

- 수도권의 벤처투자 집중도('21년 기준 약 82%)는 벤처투자 대상기업(중소·벤처·기술창업기업)보다 더욱 편중되어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벤처/기술창업기업 현황 (개사, %) -

구 분	중소기업 ('19년 기준)		벤처기업 ('21년 기준)		기술창업기업 ('21.10월 기준)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수도권	3,533,662	51.3	23,794	62.1	126,730	63.9
서울	1,474,464	21.4	10,450	27.3	47,016	23.7
비수도권	3,354,773	48.7	14,525	37.9	71,547	36.1
경북	347,313	5.0	1,551	4.0	6,773	3.4
합 계	6,888,435	100.0	38,319	100.0	198,277	100.0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계획>

- 특히, 자본, 경험,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창업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청년창업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에 대한 지원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연의 목적, 대상, 기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창업 초기 일시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만 그치지 않고, ‘창업 → 성장 → 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창업생태계의 매 단계마다 정책적·행정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 경우 출연기관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보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⁹⁾에 따라 설치된 관련 기금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의 선정, 사후 관리 및 회수자금에 대한 재투자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 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